

【 3 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제의년월일 : 1994. 11. 3.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94년도 정기회 기간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.

주요골자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인의 의원으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【 4 】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10. 31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- 양주군군립도서관 설치 근거 마련
-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도모

주요골자

- 도서관의 관장업무 지정 (안 제3조)
- 관장의 직급과 소관업무 지정 (안 제4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안

제1조 (목적) 군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고, 독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, 관리하기 위하여 양주군군립도서관 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2조 (위치) 도서관은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151-53번지에 둔다.

제3조 (업무) 도서관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.

1. 도서자료의 선정구입, 수집정리 및 보관
2.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장서관리
3. 향토자료실 관리 운영
4.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
5.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
6.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 (관장)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

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 (공무원) 도서관에 관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